

외국산 부품 사용에 관한 협약서

당사는 「우수제품 지정관리규정」에 의하여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
자료(증빙자료 포함)를 작성·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함
을 확약합니다.

1. 본 제품은 규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라 ‘물품의 총 제조원가’ 대비 [별지 제1호의 7서식] 제품규격서의 ‘주요자재소요량 표’의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’ 비율이 50% 이하인 제품임을 확약합니다.
2. 우수제품 지정 이후 제출한 원가계산서 검토 결과 동일한 산식에 의한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%를 초과할 경우 지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.

202 년 월 일

제출자(회사명) :

대 표 : (인)

조달청장 귀하